

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156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8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2019년 12월 수립된 『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』에 의거, 대화면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수립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획(안)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대화면 도시재생사업(지역특화재생)
- 사업위치 : 대화면 대화리 1001-39번지 일원
- 면적 : 110,729m²
- 사업비 : 247.11억원(국비 120.07, 군비 127.04)
※ 마중물사업 200.11억원(국비 120.07, 군비 80.04), 자체(운영지원)사업 47억원
- 사업기간 : 2024년 ~ 2027년(4개년)
- 사업내용
가. 관광 허브 플랫폼 조성

위 치	대화리 1011-1, 1001-102, 1001-166
사 업 비	134.73억원
건축면적/연면적	465㎡ / 2,412㎡ (지상 6층)
사 업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대 입주기업 · 연구진 F&B 시제품 전시 및 판매 ·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하여 체질에 맞는 먹거리 분석 · 평창의 우수 먹거리에 대한 스토리 발굴 및 상품화와 레시피 개발 ·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장기/단기 숙박공간 제공

나. 그린바이오 교육·체험장 조성

위 치	대화리 967-3, 967-5
사 업 비	46.33억원
건축면적/연면적	500㎡ / 876㎡ (지상 2층)
사 업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스마트 평생학습관 조성으로 지역-대학-기업 연계형 교육 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 · 플랜트 가든 조성으로 정원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

다. 특화거리 조성

위 치	대화시장 1길, 2길 일원
사 업 비	19.05억원
사 업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동인구가 많은 대화전통시장 거리 중심으로 푸드테마거리 조성 · 보도구간 정비 및 시설물 설치(가로등, 조형물, 볼라드 등 설치)

라. 운영지원사업(47억원)

1) 관광 허브 플랫폼 운영지원

- 프리미엄 F&B 콘텐츠 활성화 지원
- 대화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지역특화 레시피 개발 및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

2)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지원

- 도시재생거버넌스 법인화 육성,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
-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(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)

3) 그린바이오 교육·체험장 운영지원

-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시민대학 프로그램 연계한 교육체험활동 운영

-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교육 캠프 운영
 -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화디저트 개발
- 4) 특화거리 지원 : 마을정원사 양성 및 마을정원 조성을 통한 외부방문객의 테마거리 유입 유도 및 건기 좋은 환경 조성

3. 추진현황

-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: 2019. 5.
※'23. 8월 현재 3명 근무(센터장 1, 팀장 1, 팀원 1)
- 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: 2019. 12. 27.
- 대화면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: 2021. 3. ~ 2022. 4.
- 대화면 도시재생대학 추진 : 2022. 7. ~ 2022. 11.
-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컨설팅(주택도시보증공사) : 2023. 1. 10.
-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정례회의 추진 : 2023. 3. ~ 7. (8회)
-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단체 및 기관 업무협약 : 2023. 4. ~ 8.
- 도시재생사업 사전컨설팅 1차(국토부) : 2023. 7. 10.
- 평창군 도시재생추진단 회의 : 2023. 7. 17.
-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공청회 개최 : 2023. 7. 25.
- 평창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 회의 : 2023. 8. 25.
- 공모사업 사전검토 심의(기획실) : 2023. 8. 29.
- 도시재생사업 사전컨설팅 2차(국토부) : 2023. 8. 31.

4. 향후일정

- 공모사업 신청 : 2023. 9. 12.
- 강원특별자치도 평가 : 2023. 9월 ~ 10월중(서면평가→현장실사→발표평가)
※ 광역 3개소 선정 후 중앙평가를 통해 전국 15개소 선정

- 중앙(국토부)평가 : 2023. 11월 중 예정(서면평가→발표평가)
- 관계부처협의, 실무위 검토(국토부) : 2023. 11월말
- 사업선정 및 국비지원 확정(국토부) : 2023. 12월

관계법령 발취

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20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) 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등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,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